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전문제정 2021.05.06., 개정2022.03.04. 개정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단체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 및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활동”이란 대학, 학생회, 계열(학과), 동아리 등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행하는 O-T, M-T, 환영회, 체육대회, 조양문화제,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을 말한다.
- ② “인권침해행위”란 학생들의 집단 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뺨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3조(조직)

- ① 학생 단체활동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학생처장을 총괄 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2.03.04., 2024.03.01.>
- ② 사고예방을 위하여 학과 주관 행사시에는 계열(학과)장이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 ③ 학생활동 안전관리는 학생처 학생팀이 담당한다. <개정 2022.03.04., 2024.03.01.>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고)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활동 주관부서 및 단체 소속 교직원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활동을 주관하는 단체의 학생대표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7일전까지 [별지1],[별지2],[별지3]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처 학생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03.01.>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본 규정 제5조의 각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학생 단체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은 [별지1],[별지2],[별지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
- ②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1.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2.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③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 1.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④ 행사 전 사전 답사
 - 1. 보험가입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 2.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3.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⑤ 참가 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1.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고압적 행위(단체기합, 얼차려 등),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예방)교육 실시
 - 2.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교육 실시
- ⑥ 교직원 현장지도 동행
 - 1. 대학 및 학생회 주관 행사, 계열(학과) 주관 행사의 경우 교직원의 현장지도를 원칙으로 함
 - 2. 교직원의 현장지도에 학생들은 적극 협조

제6조(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행위 처벌)

- ①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 ②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행위(가해)자를 규정에 의해 징계 할 수 있다.
- ③ 교원 또는 직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학생활동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중지, 폐쇄,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단체 활동 신고서

결	담당	팀장	학생처장	총장
재				

단체명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가인원	참가학생 총명				책임(인솔)교수	성명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4학년: 명			연락처					
안전관리 책임자	계열(학과)장 : (인)				책임(인솔)교수 : (인)						
안전 확인 사항	1. 인권침해 및 안전교육 지도여부				이행() 불이행() 확인자 : 책임교수 (인)						
	2. 이동수단확인(해당사항 ○) ※선박/항공 이용시 편명 (시간) 필수 기재				대중교통, 전세버스, 선박, 항공, 기타						
					※선박/항공 이용시						
					출발 : (편명 :)						
					도착 : (편명 :)						
	3. 전세버스 안전도 확인 ※확인된 사항에 ○하세요				차량보험확인		정기검사서 확인 (차량연식은5년이내)		안전메뉴얼 확인		
4. 숙박시설확인 ※확인된 사항에 ○하세요				지자체안전점검 확인서 확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안전메뉴얼 확인			
5. 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6. 응급사항 대처 확인 (반드시 연락처 확보 후 이동)				행사장 인근 병원명 연락처 :							
				비상연락보고 : 책임(인솔)교수 → 계열(학과)장 → 학생처장 → 총장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행사 7일전에 해당부서(학생처 학생팀)에 제출 2. 계열(학과)장 및 책임(인솔)교수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안전 메뉴얼을 숙지 하시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학과명 :		학번 :		(학년)		대표학생 성명 :		(인)		
	연락처 :										

※ 교외 행사로 버스를 이용하여 숙박을 할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이며 인솔교수가 동행하지 않으면 행사 불허함.

붙임 : 1. 행사계획서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3. 단체행사 안전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표 1부

4. 기타 : 숙박시설-소방안전점검필증,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지자체안전점검필증

교통안전-차량보험가입증권 각1부, 안전교육-인권침해 및 안전교육 증빙자료

[별지2]

학생활동 행사계획서

단체명						
행사 목적						
행사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행사장소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전화)	
행사 세부일정 (구체적으로)						

[별지3]

학생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숙소 및 화재예방 점검에 관한 사항

단계	점검내용	확인	확인근거
답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최근1년 이내 지자체 또는 개별법령 안전 점검 결과)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주변의 소방서, 병원 위치 확인 및 차량 진입로 확보 여부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확인근거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십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십니까?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십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십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십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십니까?			
학생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십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십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십니까?		
		유사시 학교(041-630-5131~3),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계열(학과)장 성명 : (인)

학생대표 성명 : (인)

붙임 : 확인근거 서류 각1부